



# 서울교육대학교-서울시립대학교 간의 학생교류 및 학점교류 협약서



**제1조(목적)** 본 협약서는 서울교육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(이하 “양 교” 라 한다)간에 체결된 학술 교류협정에 따라 양 교 간 학생(학부생 및 대학원생) 교류수학 및 학점교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① “소속대학”은 학점교류 교과목을 이수하는 학생(이하 “학점교류학생”)의 소속대학(원)을 말한다.

② “교류대학”은 학점교류학생이 수강하는 상대 대학(원)을 말한다.

**제3조(학점교류학생 선발)** ① 교류대학은 매 학기 개시 1개월 전에 해당 학기 학점교류에 관한 세부사항 및 학점교류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소속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학점교류학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은 교류 대학의 규정에 따른다.

**제4조(수강신청)** 학점교류 교과목의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교류대학의 학칙에 따른다.

**제5조(교과목 이수)** ① 학점교류학생은 교류대학의 규정 및 방침에 따라 학점교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이수한 학점교류교과목에 대한 이수영역 및 취득학점의 인정 등은 소속대학의 학칙에 따른다.

**제6조(수업료)** ① 정규학기 학점교류에 따른 수업료는 별도로 징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계절 학기 학점교류에 따른 수업료는 교류대학에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성적처리)** 학점교류제도에 의한 성적은 교류대학의 학칙에 따라 평가한 후 소속 대학에 통보한다.

**제8조(기타)** ① 학점교류학생은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교류대학은 학점교류학생에게 학생 편의시설(도서관 등)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이용에 따른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속대학에서 책임을 진다.

③ 본 협약서의 내용은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.

**제9조(시행일)** 본 협약서는 양 교의 교무처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, 어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한 그 효력은 유지된다.

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서울교육대학교

박기범

---

이름: 박기범

직위: 교무처장

날짜: 2024. 12. 13.

서울시립대학교

박훈

---

이름: 박훈

직위: 교무처장

날짜: 2024. 12. 13.